

# 기안 동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경목 181.~ 30999	(전화번호 )	전 결 규 정 그 조 29항 경관수장 전 결 사항
처리기간	75. 8. 19		
시행일자	75. 8. 19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1부국장	목 안 장 조 장	합
	경무과장		합
	기획감사제장		합
기안책임자	경위 김원수	발신	국장
성 유 수 참	각안참조	발 신	국 장
제 목	서울특별시 여주중 폐지		
			제1안
			추신 내부결재
			제1회 동 건
			제2회 동 건
			제3회 동 건
			제4회 동 건
			제5회 동 건
			제6회 동 건
			제7회 동 건
			제8회 동 건
			제9회 동 건
			제10회 동 건
			제11회 동 건
			제12회 동 건
			제13회 동 건
			제14회 동 건
			제15회 동 건
			제16회 동 건
			제17회 동 건
			제18회 동 건
			제19회 동 건
			제20회 동 건
			제21회 동 건
			제22회 동 건
			제23회 동 건
			제24회 동 건
			제25회 동 건
			제26회 동 건
			제27회 동 건
			제28회 동 건
			제29회 동 건
			제30회 동 건
			제31회 동 건
			제32회 동 건
			제33회 동 건
			제34회 동 건
			제35회 동 건
			제36회 동 건
			제37회 동 건
			제38회 동 건
			제39회 동 건
			제40회 동 건
			제41회 동 건
			제42회 동 건
			제43회 동 건
			제44회 동 건
			제45회 동 건
			제46회 동 건
			제47회 동 건
			제48회 동 건
			제49회 동 건
			제50회 동 건
			제51회 동 건
			제52회 동 건
			제53회 동 건
			제54회 동 건
			제55회 동 건
			제56회 동 건
			제57회 동 건
			제58회 동 건
			제59회 동 건
			제60회 동 건
			제61회 동 건
			제62회 동 건
			제63회 동 건
			제64회 동 건
			제65회 동 건
			제66회 동 건
			제67회 동 건
			제68회 동 건
			제69회 동 건
			제70회 동 건
			제71회 동 건
			제72회 동 건
			제73회 동 건
			제74회 동 건
			제75회 동 건
			제76회 동 건
			제77회 동 건
			제78회 동 건
			제79회 동 건
			제80회 동 건
			제81회 동 건
			제82회 동 건
			제83회 동 건
			제84회 동 건
			제85회 동 건
			제86회 동 건
			제87회 동 건
			제88회 동 건
			제89회 동 건
			제90회 동 건
			제91회 동 건
			제92회 동 건
			제93회 동 건
			제94회 동 건
			제95회 동 건
			제96회 동 건
			제97회 동 건
			제98회 동 건
			제99회 동 건
			제100회 동 건



제 2안  
 수신 문화공보상장 \* 법안 경합소관  
 제목 시보 기재 의뢰

서울특별시예주종 다음과같이 경합소관  
 예주종 폐지하였으니 시보에 기재하여 주시기  
 바랍니다.

1. 폐지내용

예 주 제 목	예주번호	시행년월	비 고
서울특별시경합국 의무선 운영주정 폐지주정			
고물영업허가사무 취급운영			
전당도영업허가사무 취급운영			
어린이등차기센터 운영운영			
비상경계 실시주정			
수사지령 운영운영			

첨부 폐지예주 종도안 6부. 끝

## 폐 지 예 규 목록

영번	예 규 명	근거	폐 지 사유	비고
1	서울특별시경찰국 의무산 운영 규정	제 139호 67. 1. 7	국립경찰병원 활용으로 인함	
2	고물영업허가 사무취급 규정	제 156호 66. 12. 29	고물영업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 4539호 70. 1. 27. 개정 72. 12. 28 대통령령 제 6412호) 시행으로 인함	
3	전당포영업허가 사무취급 규정	제 155호 66. 12. 29	전당포영업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 4456호 69. 12. 16. 개정 72. 12. 28 대통령령 제 6413호) 및 전당포영업법시행규칙 (내무부령 제 5호 69. 12. 28) 시행으로 인함	
4	어린이등 학기센터 운영윤강	제 151호 66. 12. 29	서울특별시사무보통장규칙 (시규칙 제 151호 72. 7. 4) 제정시 보완 사항 신설. 이업무관장시행으로 인함	
5	비상경계 실시 규정	제 126호 66. 12. 29	경찰비상업무지침 (내무부령 제 350호 72. 2. 9) 시행으로 인함	
6	수사지령 운영윤강	제 19호 69. 5. 2	서울특별시수사레이징시스템 운영윤강 (서울특별시여주제 202호 74. 11. 1) 과 조목으로 인함	

백 지 사 유

(서울특별시경찰국 의무실 운영규정)

1. 이 규정은 국립경찰병원이 현대화 되기 이전인 1967. 1. 7 에 서울시  
경찰관 및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경찰국에 설치 운영하여왔  
으나.
2. 국립경찰병원의 시설 및 확장과 의료신 강화를 개선으로 경찰관 및 소방관  
이르기까지의 건강관리업무를 관장케 되므로써 이를 폐지조작함.

1. 폐 지 사 유

이 고물영업허가사무취급요령은 고물영업법시행령 (70. 1. 27 대통령령 제 4339호, 개정 72. 12. 28 대통령령 제 6412호) 시행이전인 1966. 12. 29 제정된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에 세부사항이 명시 되어 있어 이를 폐지코자함.

폐 지 사유

이 전담포영업허가사무 취급요령은

1. 전담포영업법시행령(대통령령 제445호 69.12.16제정, 대통령령 제50호 72.12.26 개정) 및
2. 전담포영업법시행규칙(내무부령 제5호 59.12.30 제정) 에 사무취급요령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폐지조작함.

폐 지 사 유

어떤이등 찾기선며 운영오강에 의거 미아,가혹인및 유 심물등 일반행정  
수배업무를 취급하여 왔으나

1970. 7. 4 공포된 서울특별시규칙제 1310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 
시행으로 경찰국의 하부조직중 경무과에 민원봉사실을 신설하고 분상사무도  
이 업무를 관장 수행하게함으로써 이를 폐지코자함.

폐 지 이 유

( 비상경계 실시규정 예규 제125호 )

1. 내무부훈령제 350호 (73. 6. 9) 경찰비상업무 지침의 제정 실시로 인하여 이 규정음 폐지노자함.



폐 지 사 유

1. 이 수사지령은 영오강은 서울특별시 수사레이징시스템운영모형 (서울특별시예규 제232호 74. 11. 1 ) 과 중복되므로 이통 폐지로 자 함.

서울특별시 경관국토의복합은영규정폐지  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

1975년 9월 19일

서울특별시 장

구



(예 규 안)

법무심사	1975.8.21	제 18 호
심사자	법제 제 18 호	법무

서울특별시예규 제 302 호

서울특별시경찰국 의무실운영규정 폐지 규정

서울특별시예규 제 199 호 ( 67. 1. 7 ) 서울특별시경찰국 의무실운영규정은

이를 폐지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5년 8월 19일 부터 적용한다

예규제 302 호

~~서울특별시~~ 고물영업허가사목총칙을경과지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

1978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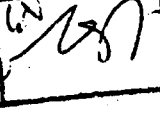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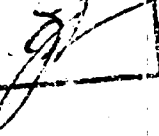


2. 예규안

( 예 규 안 )

서울특별시예규 제 303 호

그물영업허가사무 취급요령 폐지규정

법무심사	1975. 8. 21	제 30 호
심사자	법제국장	법무국장
		

서울특별시예규 제136호(66. 12. 29) 그물영업허가사무 취급요령은 이를

폐지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5. 8. 19. 부터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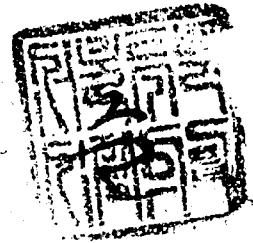
예규제 303 호

~~서울특별시~~ 전당포영업허가사무취급증명체제

규정을 다음과 같이 **발령** 한다

1975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

(예규 제 304호)

법무심사	58. 2. 21	21
심사	21	21

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mps are present on the form.

조선법률시정규 제 304호

선남포영업허가사무 취급요령

조선법률시정규 제 304호 (1956, 12, 29) 선남포영업허가사무 취급요령은 이규  
제 304호이다.

부 칙

이규정은 1975년 8월 19일부터 적용한다.

예규제 304호

~~서울특별시~~ 어린이응답권기센터운영강령제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

예규제 호

1975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



( 예 규 제 )

법무심사	1975.8.21	22호
심사		

서울특별시청  
인

서울특별시예규 제 305호

어린이동 찾기센터 운영요강 폐지규정

서울특별시예규 제 131호 ( 1966.12.29 ) 어린이동 찾기센터 운영요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5년 8월 19일 부터 적용한다.

예규제 305호

~~서울특별시~~ 비상경제상시대책 폐지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

1975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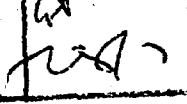

구

라



예 규 안

서울특별시예규 제 306호

법무심사	1975. 8. 21	제 23호
심사자	법무국장	법무국장
		

비상경계 실시규정 폐지규정

서울특별시예규 제 125호 (55.12.29) 비상경계 실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5년 8월 19일 부터 적용한다.

예규제 306호



~~서울특별시~~ 수사지령운영요강 폐지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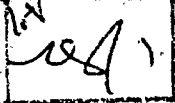
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

1975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장 구 라



예 규 안

법률 심사	1958 기제 21호
심사처	장법무부장관
	

서울특별시예규 제 307호

수사지령운영오감 폐지규정

서울특별시예규 제 15호 (59. 5. 2) 수사지령 운영오감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5년 8월 19일부터 적용 한다.

예규제 307호